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. 6. 26 선고 2018가단471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주식회사 B

특별대리인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6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3. 6. 11. 접수 제6584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강수정

별지